



병무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·시행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병역법 제58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등의 병적편입)
- 나.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)
- 다. 관보 제 19264호(2018. 5.28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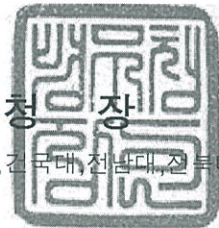
2.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'18. 5.29.부로 「병역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, 주요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에게 안내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군수련기관, 법학전문대학원 : 복수국적자 선발제외

나. 수의과대학교 :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, 복수국적자 선발제외

붙임 1.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사항. 끝.

병무청장



수신자 24개 법학전문대학원 및 10개 수의과대학 (강원대, 건국대, 전남대, 전북대, 제주대, 충남대,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), 264개 군수련기관

주무관 이은하 행정사무관 한순영 과장 2018.6.12. 최규석

협조자

시행 현역입영과-3825 (2018. 6. 12.) 접수

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/ <http://www.mma.go.kr>

전화번호 042-481-2737 팩스번호 042-481-2730 / lyhsmall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

병역법시행령 주요 개정사항

①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

- 수의장교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수의과대학 본과 1·2학년 평균 성적을 반영하도록 선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.

<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>

- 추진배경 :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권고('17.3월)

- 주요내용

구 분	현 행	개 선
선발기준	신체등급점수 (100점)	신체등급 점수(100점)
	수능성적(50점) ◦ 폐지	본과 1·2학년 평균성적(100점)
	예과 1·2학년 평균성적(50점) ◦ 폐지	
선발시기	본과 1학년	본과3학년
적용대상	2017.12.31.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	2018.1.1.이후 수의과대학 입학자

- 시행일 : 2018년 5월 29일

② 복수국적자 선발제외

- 금년까지 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시 복수국적 포기 신청자에 대하여 조건부 선발하였으나, 2019년부터는 복수국적자 선발 제외
- △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(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 에 의거 조건부선발 폐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8조의4(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) ① 국방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국방부장관: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·나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<u>4년</u> 후 필요인원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농림축산식품부장관: 공중방역수의사 <u>4년</u> 후 필요인원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8조의4(의무·법무·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----- <u>2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---- <u>2년</u>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9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,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</p>	<p>제119조(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신발하되, 신발 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,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.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,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: 해당 수의과대학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수의과대학 예과 1·2학년 평균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

④ ~ ⑦ (생략)

----- 선발(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하되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: 수의과대학 본과 1·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4조(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제1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